



**김정현**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jhyunkim@hanafn.com

학력·자격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년) / 변호사  
경력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법무법인 한양 근무, 사회연대은행 자문변호사



# 노후 행복을 위한 시스템 효도계약서

과거에는 부모를 부양하고 효도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효도가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책임의 주체도 공동체와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추어 개인의 노후 대비도 체계화되고 있다. 효도계약서는 자식과 효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며 노후 행복을 위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여름 방영되었던 드라마 ‘품위 있는 그녀’에는 가족 모임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사고에서 간병인이 고령의 아버지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들자, 자식들이 간병인의 속내를 의심하는 장면이 나온다. 자식들은 간병인의 행동이 아버지의 재산에 눈독을 들여서 한 것이라고 우기지만, 마음 둘 곳 없는 아버지는 간병인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고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된다.

흔히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노년의 삶이 편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돈이 가족의 존경과 애정까지 보장하진 않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부모를 미치지않아 재산을 물려줄 사람 정도로 여긴다. 이

런 상황에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는 헌신적인 간병인을 만난다면 어찌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

**행복한 노후의 조건**

드라마 ‘품위 있는 그녀’가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는 물론 정서적 안정감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급속한 사회 변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간의 유대감은 점점 약화되고 전통적인 효 사상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노후까지 자녀들과 살가운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는 것 또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도권 거주 대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효도의 의미’에 관한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 세대는 자녀가 자주 찾아오거나 안부 전화를 하는 등의 ‘정서적 지지’를 가장 훌륭한 효도라고 생각하지만, 자녀 세대들은 부모에 대한 병간호나 ‘경제적 지원’을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알아서 자식 된 도리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은 아닐까? 결국 물질적·정신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원한다면 부모는 자녀들과 효도의 의미에 대하여 미리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 효도의 내용을 명시한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자녀들과 부양의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과거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 머무르던 부양의무는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그 책임의 주체도 가족이나 자녀에게 한정되던 것이 공동체와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추어 개인의 노후 대비도 점차 체계화되어야 한다. 효도계약서는 노후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안 중 하나이다.

**효도계약서란**

노년의 자산가들 사이에서 ‘효도계약서’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효도계약서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되, 효도를 조건으로 하여 이 조건(효도)을 위반할 경우 이미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계약이다. 효도계약서가 천륜(天倫)인 효도를 쌍방간 계약을 통하여 강제한다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현실적인 필요성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 부모는 증여 이후 자식의 부양의무 위반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으며, 자식은 증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게 되는 등 쌍방 모두에게 일정한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효도계약서 작성방법**

민법이 제한하고 있는 증여계약의 해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효도계약서이다. 특히 2015년 말에



**효도계약서와 불효자방지법**

효도계약서는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부담부(조건부) 증여계약서’의 일종이다. 효도계약서가 등장하게 된 것은 현행 민법이 증여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상 증여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①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 ②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 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민법은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제555조 내지 제557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6개월로 단기이고, 제558조에서는 이미 증여가 이행된 경우(예금의 명의자가 변경되거나 부동산의 등기가 이전되면,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행한 부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제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여에 관한 민법규정을 변경하려는 ‘불효자방지법’이 2015년 처음 발의되어, 현재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유효성이 인정된 이후, 효도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효도계약서는 반드시 부모 자식 간에만 작성되는 것이 아니며, 증여의 상대방이라면 누구와도 작성 가능하다.

효도계약서의 작성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①증여재산, ②증여의 조건(효도), ③조건의 불이행 시 해제'의 3가지 요소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기타 계약명의 등 형식적 사항을 갖추면 된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증여의 조건(효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증여재산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증여의 조건(효도)은 정기적인 방문, 생활비 지급과 같은 경제적 부양, 증여목적물의 처분제한이나 수익배분에 관한 것이다.

2015년 말 효도계약서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의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20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서 충실히 부양하겠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부모와 한 집에 살면서도 아픈 어머니의 간병을 따로 사는 누나에게 떠넘겼으며, 급기야 어머니에게 "요양병원에 가시는 것이 어머니"고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아들의 태도에 실망한 아버지는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 반환을 법원에 청구하였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마침내 대법원은 계약서의 존재를 근거로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었다. 씩씩한 이야기이지만 하지만, 효도계약서의 강력한 효력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노후관리에는 유산관리, 가족관리도 포함되어야**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갑작스럽게 효도계약을 작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노후를 대비하여 꾸준히 건강관리, 소득관리를 하듯 재산의 대물림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효도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효도의 의미에 대한 서로 간 인식 차이를 좁히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계약서의 작성에 대하여 불편한 기분이라면, 금융기관과의 신탁계약을 통하여 생전에는 재산관리를 맡기고 상속개시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대물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산의 대물림 방안, 자녀들과의 부양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효도계약서 작성 전에 증여와 관련된 세무상담, 효도계약서 내용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므로 거래하는 PB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ㅎ**

**... SUMMARY**

**효도계약서 작성법**

- 1 효도계약서는 '부담부(조건부)증여계약서'의 일종으로 반드시 부모 자식 간에만 작성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의 상대방이라면 누구와도 작성 가능하다.
- 2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①증여재산, ②증여의 조건(효도), ③조건의 불이행 시 해제'의 3가지 요소를 기재하도록 한다.
- 3 증여의 조건(효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증여하는 재산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KEB하나 리빙트러스트**  
대한민국 유언대용신탁

대대손손 가문의 부와 영예를 잇는다

※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 손실 유의

계약&집행 시 1회 신탁재산의 0.2%(최저 1,000만원) & 0.3%(최저 1,500만원) 관리보수 연 0.2~1%

유효기간 : 2018년 6월 30일까지 유효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17-03011호(2017-07-14~2018-07-13)

문의 : 02-2002-2229

**효도계약서(부담부 증여)**

○○○(이하 "증여인"이라 한다)와 ○○○(이하 "수증인"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증여재산(이하 "증여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 다음 -

**제1조(부담부 증여계약)** 증여인은 증여인 소유 증여재산을 이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수증인에게 증여하고 수증인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증여재산의 표시)**

- |                             |                      |
|-----------------------------|----------------------|
| <b>1. 부동산</b>               | <b>2. 현금 및 예금</b>    |
| 1) 서울 종로구 종로 33 토지 00평방미터   | 1) 현금 00원            |
| 2) 서울 종로구 종로 34 상가 12동 304호 | 2) KEB하나은행 예금채권 00억원 |

**제3조(부담부분) 위 증여재산은 수증인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다.**

- ① 증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증인은 위 증여재산 가액을 한도로 매달 증여인의 KEB하나은행 000-000000-00000 계좌로 **생활비 000만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발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사용 등록]
- ② 수증인에게 증여된 부동산의 **임대료 중 10%**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증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증인은 위 증여재산 가액을 한도로 증여인의 **병원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④ 부모의 입원·치료비 부담(차매 등)해야 한다.
- ⑤ 증여된 부동산을 매각 또는 담보제공 시에는 **증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⑥ 차매 등 공동후견인으로 참여한다.
- ⑦ 제사 등 가족행사 참여해야 한다.
- ⑧ 수증인은 매월 0원 이상 손자를 데리고 **증여인을 방문**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수증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증여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2~8항에 대해 2회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위 사항 불이행 시
2. 증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증여부동산을 매각 또는 담보 제공하였을 경우

**제5조(계약의 해제 후 조치)**

- ① 제4조에 의해 계약해제가 되었을 경우, 수증인은 증여인에 대해 지체 없이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인도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이미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현금 및 예금은 원금을 해제일로부터 0일 내에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증여인과 수증인은 위 부담부증여를 증명하기 위해 이 부담부 증여계약을 작성하고 증여인 및 수증인은 아래에 각 기명날인하여 1통씩 소지 보관한다.

2017. 10. .

(증여인) ○ ○ ○ (인) (221230-1000000)

(수증인) ○ ○ ○ (인) (481130-1000000)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유의사항 : 부담부증여 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최대한 현금을 많이 확보한다.

계약서는 고소를 작성하여 1복씩 나누어 기재하여 도장(인감도)을 고소에 갈아서 찍는 방식(제1)으로 하면 분쟁 발생 시 유효성을 입증하기 용이하다.

증여재산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산유형에 따라 부동산/예금 등 분 유형별 증여재산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추상적인 동헌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본인' 또는 '가족' 지체로 추상적이지 않도록 본인이 생략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행은 증여인은 하는 경우라면 제약을 특정하여 증여인(후도)이 이행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에게 명확히 불명확해도 꼭 써야 한다.

법정본인